

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성대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4년 5월 29일
-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1일

3. 제안이유

- 아르바이트 모집 대상을 학생에 한정하는 것은 「헌법」 제11조, 「국가인 권위원회법」 제2조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7조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학력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.
- 따라서, ‘대학생·고등학생’으로 국한된 모집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모든 청년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을 변경
- 대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제한된 모집 대상을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청년에 맞게 개정 (제1조, 제2조, 제3조 및 제7조)
- 오탈자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(제5조 및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그간 학생(대학생 및 고등학생)에 한정되어 선발하는 행정인턴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, 우리 충청북도 역시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인턴 관련하여 그 자격을 대부분 대학생으로 한정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음.
-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(08진차1326)에 따르면 행정인턴 채용에 있어 ‘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대학 졸업자’로 한정하는 것은 차별 행위임으로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한정된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(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)으로 확대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소지를 해소하고,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